

의안번호	2216752
의 퇴 인	전진숙 의원
회 답 일	2026. 3. 13.
추계번호	26C08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95조의5 (실태확인)	(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내지 아니한 체납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음 (제2항) 건강보험공단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5조의5 (실태확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체납 실태조사를 위해 확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 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공단의 사업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출액이 기존 수준을 상회할 경우, 건강보험의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¹⁾, 이에 연동되는 국가의 지원금도 증가할 수 있음²⁾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하여 건강보험료율이 결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되므로,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확인원 채용 여부 및 규모, 실태조사의 기간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
 - 안 제95조의5제4항은 실태확인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 실태확인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부재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